



버튼형·코인형 전지 살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꼭 확인하세요!

- 어린이의 버튼형·코인형전지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시행 예정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김대자, 이하 국표원)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*하여, 이를 예방하고자 버튼형·코인형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.

* [연도별 10세 미만 어린이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발생 현황]
(단위: 건) (소비자원 제공)

연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계
건수	62	44	62	61	39	268

이에, 앞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모든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된다.

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, 리모콘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,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 반응으로 식도, 위 등에 화상, 천공,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, 즉시 제거하지 않을 시,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.

실제로, 미국에서는 2020년에 18개월 유아(Reese Hamsmith)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자 포장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(Reese's law)을 제정하여 '24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.

어린이보호포장은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고, 포장에는 안전그림 및 경고문구(붙임2 참조)를 표시하는 방안의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하고,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'26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.

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“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 아이들이 삼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”임을 밝혔다.

담당 부서	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책임자	과 장	정대환 (043-870-5450)
		담당자	연구사	김대한 (043-870-5459)

대한민국
지정브리핑



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
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

어린이 보호포장 시행

NO!



버튼 모양 및 코인 모양의
리튬 및 비리튬계 모든 전지는
어린이보호포장 사용신고 대상!

*산업용은 제외

어린이보호포장의 적용

직경이 16~31.7mm인 전지의 포장은
이중포장 형태 적용



이중포장의 크기는 31.7mm를 초과하여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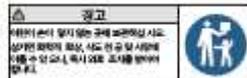
도구없이 개봉 시 이중포장 형태 유지

어린이보호포장의 안전 표시사항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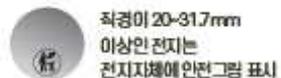
안전그림 표시



경고문구 표시



전지 자체 표시사항



어린이보호포장
'KC 마크'를 확인하세요.



KC마크 및 어린이보호포장신고번호 표시



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:
A000B0000-00000C

□ 적용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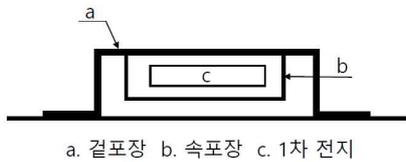
- 산업용을 제외한 직경이 31.7mm 이하의 리튬 및 비리튬계 모든 전지

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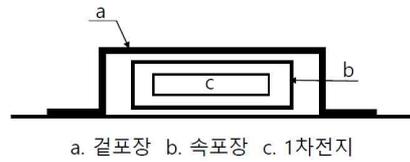
- (포장방법) 직경이 16~31.7mm범위의 대상 전지는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며, 안전기준에 포장형태 예시를 제시

< 포장형태 >

- ① 속포장이 겉포장과 붙어 있는 형태 (겉포장의 직경은 31.7mm를 초과할 것)



- ② 속포장이 겉포장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 (속포장의 직경은 31.7mm를 초과할 것)



- (표시) ① 직경이 31.7mm이하 전지 “포장” 에 안전그림을 표기하고, 경고문구 기재
- ② 직경이 20~31.7mm범위의 전지는 “전지 자체” 에도 안전그림 각인
- ③ 전지종류, 극성, 수입자, 포장자, 제조국 등 ‘그 밖의 표시사항’ 기재

< 주의·경고 표시 예시 >



형태 1



형태 2



형태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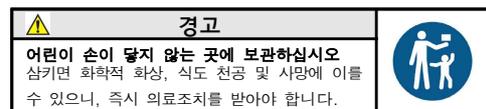


형태 4



형태 5

(안전그림)



(경고문구)